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2차)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청약자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금 이외에 3월 21일(화)에 중도금 10%, 5월 8일(월) 이내에 잔금(주택도시기금 포함) 80%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후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기금 포함) 대출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자금여력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17.*(금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3910009***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5.16.***(목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19000441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 금광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LH가 사업시행자인 민관합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 **이 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및「주택법」제*2*조에 따른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전용*85*㎡이하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이전고시 완료 후 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사업 진행에 따라 이전고시가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성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규제지역입니다.

■ **전매제한**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제한 기간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이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table>
<tr><th>구 분</th><th>무순위 사후접수</th><th>당첨자발표</th><th>당첨자서류제출
(예비입주자 포함)</th><th>계약체결</th><th>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th></tr>
<tr><td>일 정</td><td>2월 22일(수)</td><td>2월 27일(월)</td><td>3월 01일(수)~02일(목)</td><td>3월 07일(화)</td><td rowspan="3">·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 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td></tr>
<tr><td>방 법</td><td>인터넷 청약
(09:00 ~ 17:30)</td><td>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d colspan="2">–</td></tr>
<tr><td>장 소</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td><td colspan="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609호
LH 분양사무실</td></tr>
</table>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분양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3.01.0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9층 39개동 총 5,320세대, 일반분양 2,329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계약해제분 11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05월(잔금 납부 후 즉시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공공 주택	2023910009	01	059.9800A	59A	3	108	1601
						406	1305
						407	305
		02	059.9500B	59B	2	203	404
						304	704
		03	059.9000C	59C	1	202	404
		04	074.6200A	74A	2	106	1403
						107	803
		05	074.8800D	74D	1	106	1201
		06	084.9800A	84A	1	402	703
		07	084.6000E	84E	1	108	2204
	합 계				11		

■ 공급가격 및 납부 일정

(단위:원)

타입	동	호수	공급금액(원)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0%) 2023.03.21.	잔 금 (80%) 2023.05.08.(입주시)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59A	108	1601	475,310,000	47,531,000	47,531,000	325,248,000	55,000,000
	406	1305	470,550,000	47,055,000	47,055,000	321,440,000	
	407	305	456,440,000	45,644,000	45,644,000	310,152,000	
59B	203	404	464,520,000	46,452,000	46,452,000	316,616,000	
	304	704	464,520,000	46,452,000	46,452,000	316,616,000	
59C	202	404	469,210,000	46,921,000	46,921,000	320,368,000	
74A	106	1403	548,900,000	54,890,000	54,890,000	364,120,000	75,000,000
	107	803	548,900,000	54,890,000	54,890,000	364,120,000	
74D	106	1201	556,360,000	55,636,000	55,636,000	370,088,000	
84A	402	703	595,180,000	59,518,000	59,518,000	476,144,000	-
84E	108	2204	720,860,000	72,086,000	72,086,000	576,688,000	

■ 발코니확장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타입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원, 부가세 포함)	계약금 (10%) 계약시	잔 금(90%) 2023.05.08.(입주시)
59A	108동 1601호	발코니확장	11,000,000	1,100,000	9,900,000
		삼성)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일반형)	3,210,000	321,000	2,889,000
		무상옵션 - 하부장(기본 86cm), 마루(MODERN OAK)	0	0	0
		소계	14,210,000	1,421,000	12,789,000
	406동 1305호	발코니확장	11,000,000	1,100,000	9,900,000
		LG하우시스 3연동 금속슬라이딩(브론즈 불투명유리)	1,600,000	160,000	1,440,000
		무상옵션 - 하부장(기본 86cm), 마루(MODERN OAK)	0	0	0
		소계	12,600,000	1,260,000	11,340,000
	407동 305호	발코니확장	11,000,000	1,100,000	9,900,000
		무상옵션 - 하부장(기본 86cm), 마루(MODERN OAK)	0	0	0
		소계	11,000,000	1,100,000	9,900,000
59B	203동 404호	발코니확장	11,000,000	1,100,000	9,900,000
		무상옵션 - 하부장(선택 89cm), 마루(IVY OAK), 침실통합(분리형)	0	0	0
		소계	11,000,000	1,100,000	9,900,000
	304동 704호	발코니확장	11,000,000	1,100,000	9,900,000
		무상옵션 - 하부장(기본 86cm), 마루(MODERN OAK), 침실통합(분리형)	0	0	0
		소계	11,000,000	1,100,000	9,900,000
59C	202동 404호	발코니확장	11,400,000	1,140,000	10,260,000
		무상옵션 - 하부장(기본 86cm), 마루(MODERN OAK)	0	0	0
		소계	11,400,000	1,140,000	10,260,000
74A	106동 1403호	발코니확장	11,500,000	1,150,000	10,350,000
		무상옵션 - 화장대(좌식형), 하부장(기본 86cm), 마루(SAND OAK)	0	0	0
		소계	11,500,000	1,150,000	10,350,000
	107동 803호	발코니확장	11,500,000	1,150,000	10,350,000
		무상옵션 - 화장대(좌식형), 하부장(기본 86cm), 마루(SAND OAK)	0	0	0
		소계	11,500,000	1,150,000	10,350,000
74D	106동 1201호	발코니확장	12,000,000	1,200,000	10,800,000
		삼성)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침실3(일반형)	4,280,000	428,000	3,852,000
		무상옵션 - 화장대(입식형), 하부장(기본 86cm), 마루(SAND OAK)	0	0	0
		소계	16,280,000	1,628,000	14,652,000
84A	402동 703호	발코니확장	12,000,000	1,200,000	10,800,000
		삼성)시스템에어컨 거실+침실1+침실2+침실3(일반형)	5,600,000	560,000	5,040,000
		무상옵션 - 화장대(입식형), 하부장(기본 86cm), 마루(IVY OAK)	0	0	0
		소계	17,600,000	1,760,000	15,840,000
84E	108동 2204호	발코니확장	15,100,000	1,510,000	13,590,000
		무상옵션 - 화장대(좌식형), 하부장(기본 86cm), 마루(SAND OAK)	0	0	0
		소계	15,100,000	1,510,000	13,590,000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해제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써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추가품목 외에는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분양대금/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주택도시기금 입금계좌(입주시)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8동 1601호 계약자 → '10816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동호별 옵션내역이 상이하며,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세대별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동호별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주택도시기금의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가상계좌를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각 세대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 revenuestamp.or.kr, 혹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2.27(월) ~ 2023.03.08 (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무순위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2.27(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 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서류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국내거주 확인[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출입국사실증명원		○	세대원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 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포함)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무주택 소명자료		○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제출 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계약 불가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3.02.17.(금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업주체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 판정시 당첨자 지위가 상실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3.03.07.(화요일) 10:00~16: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본인 방문시에만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계약장소 내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3.02.17.(금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진행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전 블럭의 지하주차장 층고는 2.3M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등은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에 주의 바랍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05.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609호 LH현장사무실(야탑동, 분당BYC빌딩)

■ 분양문의 : 031- 780- 0701